

1. 개정이유

국정과제(춤춤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) 등에 따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, 보증금 대출 등 신규 사업이 마련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,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거지원 사업에 이사비·생필품 지원, 보증금 대출 지원을 추가(안 제2조)
- 나. 긴급지원주택 거주자도 주거사다리 사업 대상자에 포함(안 제3조제1항)
- 다. 입주 신청서를 주거지원 신청서로 용어 변경하고 주거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은 주민센터장 등은 기존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와 함께 별지 3의2 거주사실 조사서를 관할 시장 등에 제출(안 제4조제2항)
- 라. 민간임대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비정상 거처 거주 사실 확인서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지 서식 5 신설(안 제4조제4항)
- 마. 시장 등은 입주자 선정 시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외하도록 추가(안 제9조제2항)
- 바. 이사비 지원을 위해 별지 서식 6에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신설하고, LH 등 사업시행자가 계약시 발급하도록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추가(안 제9조제7항)
- 사. 주거급여 조사 기관 외에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

운영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입주대상자 선정 특례 부여(안 제15조의2)

아.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및 통보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거기본법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이주 수요 발굴 등 조사할 수 있도록 수정 (안 제16조)

자. 매입·전세임대 공급 물량 범위를 15%에서 30% 범위로 확대(안 제17조)

차. ‘별지1 입주 신청서’를 ‘별지1 주거지원 신청서’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등 서식을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개선”을 “개선 사업, 이사비·생필품 지원 사업, 보증금 대출 지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

제4조의 제목 “(입주신청)”을 “(입주신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입주신청서”를 각각 “주거지원 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기초조사서”를 “기초조사서와 별지3의2 거주사실 조사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정상 거주 거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.

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. 단, 이 경우 시장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제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계약 체결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
제15조의2제1항 중 “조사기관은”을 “조사기관과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조사기관이”를 “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“조사기관“으로”를 ““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“로”로, ““조사기관의”를 ““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사기관이”를 “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11월말까지”를 “조사결과 및 연간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이주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.

제17조제3항 중 “15퍼센트”를 “30퍼센트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2021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7월 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과의 관계) 이 훈령 시행 후 다른 훈령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서

◎ 입주자 현황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비주택거주기간	개월
성별	남 여	연락처	
결혼여부	기혼 미혼 이혼 별거	자녀	남 ()명, 여 ()명

◎ 희망 주거지원 유형

공공임대	[]매입 []전세 []건설 []기타	민간임대	[]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◎ 의료현황

장애여부	없음 있음([]언어장애 []지체장애 []정신장애 []시각장애 []청각장애)		
의료급여	[]1종 []2종 []기타	장애인 등록여부	해당없음 해당됨()급

◎ 취업현황

취업업종		직장명/연락처	/전화:
월급여	()만원	총근무기간	~ ()개월
4대보험 여부	[]의료보험 []산재보험 []고용보험 []국민연금직책		

◎ 입주신청자 가족관계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관계	월소득액	직업	동거여부

◎ 신청시 구비서류

입주신청	- 신청서
가족·주거	-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기재), 거주사실확인서 중 택 1 *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구성전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포함
건강상태	-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사본 등 *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

◎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

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합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제공받는 자: 국토교통부장관, 시장·군수·구청장, 관할 주거복지센터
- 제공 목적: **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, 공공임대주택 신청,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, 기타 자원연계**
-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공공임대 선정 결과
- 보유 및 이용 기간: [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] 6개월, [입주예정자] 3년, [계약자] 영구

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.

임차인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※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한 지원금을 받을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비정상거처 거주사실 조사서

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☐ 남 ☐ 여
주 소					
연락처					
조사 내용	조사일시	20 . . . ()			
	주거유형	☐ 쪽방 ☐ 고시원·여인숙 ☐ 비닐하우스 ☐ 노숙인 시설 ☐ 컨테이너·옴막 ☐ PC방·만화방 ☐ 반지하 ☐ 기타()			
	주거여건 및 거주여부 (상세)				
	증빙자료 (사진 등) *첨부가능				
조사결과	상기 대상자의 사실조사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함				
조사자	소속:		직급:		
	성명:		(인)		

※ 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첨부

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

성명	생년월일		성별	☐ 남 ☐ 여
주소				
연락처				
주거유형	☐ 쪽방 ☐ 고시원·여인숙 ☐ 비닐하우스 ☐ 노숙인 시설 ☐ 컨테이너·옴막 ☐ PC방·만화방 ☐ 반지하 ☐ 기타()			
용도	용자 지원	제출처		

위 사람이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에 따른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성 명 (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귀하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주거지원사업”이란 쪽방·비닐하우스 거주자, 가정폭력 피해자,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·매입·전세임대사업, 주거위생·안전·환경 <u>개선사업</u> 등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개선사업, 이사비·생필품 지원사업, 보증금 대출 지원</u> ---.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입주대상자)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.)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,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.(이하 “입	제3조(입주대상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주대상자“라 한다)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제4조(입주신청)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운영기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별지1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접수받은 운영기관 또는 주민센터장은 신청자의 소득·재산, 가족, 주거, 건강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주자 현황조사(면접조사를 포함한다.) 입주자 현황조사(면접조사를 포함한다.)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한다. 이 경우, 주민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입주신청 등) ① -----

----- 주거지원 신청서-----.

② ----- 주거지원 신청서-----

----- 기초조사서와 별지3의2 거주사실조사서-----.

센터장은 현황조사 시행시 운영
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가. ~ 다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입주대상자 선정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입주자
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사람은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
사람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보
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거주 사
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
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
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
5호서식의 비정상 거처 거주 확
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
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·면
·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
신청인에게 발급한다.

제9조(입주대상자 선정 등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
의심되는 경우. 단, 이 경우 시
장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
실시해야 한다.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③ ~ ⑥ (생략)

⑦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
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
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제15조의2(입주대상자 선정 등의
특례) ①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
한 고시」 제27조에 따른 조사기
관은 제4조의 입주신청 및 제9
조의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업
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이
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업무를
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
및 제2항과 제9조제1항부터 제5
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
경우 제4조제1항의 “주민 센터
”는 “조사기관”으로, 제4조제2
항의 “주민센터장”과 “관할 시
장 등”은 “조사기관의 장”으로,
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
규정 중 “시장 등”은 “조사기관
의 장”으로 본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계약 체결 시 별지 제6호서식
에 따른 주거상향 유형 확인
서 발급

제15조의2(입주대상자 선정 등의
특례) ① -----
----- 조사기
관과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에
따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
사업시행자는 ----.

② ----- 조사기관 및 사
업시행자가 -----

-----.

--- “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
”로-----
----- “조사기관 및 사업시행
자의” -----
----- “조사기관
및 사업시행자의” -----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기관이 선정한 입주대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“시장 등”이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실태조사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시장 등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에 거주하는 사람의 현황을 조사토록 하여,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주거취약계층 입주수요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7조(주택의 공급) ①·② (생

-----.

③ ----- 조사 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-----

--.

제16조(실태조사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이주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----- 조사결과 및 연간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-----

-----.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.

제17조(주택의 공급) ①·② (현

략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호수를 「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 및 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·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<u>15퍼센트</u> 범위로 한다. ④ (생략) 제25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1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퍼센트</u>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